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가단1488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7. 6. 7.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7. 6. 7.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D은 2008. 1.경 주식회사 E과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D은 2017. 2.경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였고, D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은 2019. 5. 16.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341826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3. 17.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3,612,637원 및 그 중 2,955,216원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2021. 11. 30.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3,988,812원 및 그 중 2,955,216원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¹⁾이다.

나.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1) D은 2016. 8. 3. 사망한 모(母)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른 자녀들인 피고들 2명, G, H, I, J과 공동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상속지분은 D과 같이 모두 각 1/7 지분).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2003. 5.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3. 11. 2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속재산인데, 망인이 2016. 8. 3.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은 2017. 6.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각 1/2 지분씩 공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8.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망인이 사망한 '2016. 8.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D의 채무초과상태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17. 6. 8.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및 K, L자산관리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3건 및 7필지 토지2) 중 1/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망인의 사망일인 2016. 8. 3.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2016. 8.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된 것은 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38호)'3)의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D, 피고들, G,

H, I, J 등 7명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일자가 2017. 6. 7.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처분문서인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재와 같이 2017. 6. 7.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17. 6. 7.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2.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주식회사 E은 D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2017. 6. 7.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으나 2021. 11. 30. 기준으로 한 3,988,812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을 갖고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D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7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내용(D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7필지 토지의 1/7 지분 역시 모두 포기하였다)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주식회사 E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D과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D와 연락이 닿지 않아 D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들이 D을 위하여 지급한 금전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D의 형제들로서 D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인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과 D 사이에 그 상속재산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D의 상속지분 1/7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자인 D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 지분을 각 1/2씩 분할한 각 1/14 지분($=1/7 \times 1/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별지

- 1) 판결문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상이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2)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3건 외에 7필지 토지가 더 있었는데, 위 7필지 토지 역시 공동상속인 중 1명인 G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 3)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